

ECOSOC 협의지위

1. 유엔 헌장상 ECOSOC과 NGO와의 관계

- 유엔헌장 제71조에 NGO에 관한 유일한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NGO에게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Article 71 :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make suitable arrangements for consult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are concerned with matters within its competence. Such arrangements may be mad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where appropriate, with national organization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concerned.

2. ECOSOC 결의 1996/31과 NGO의 협의지위

- ECOSOC과 NGO와의 이러한 관계는 1968.5월 ECOSOC 결의 1296에 의하여 약 30여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1996년 ECOSOC 결의 1996/31에 의하여 NGO에게 3가지 범주의 협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게 되었음.
- 유엔에서 NGO는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와 특정분야 협의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그리고 특정문제 자문지위(Roster)의 세가지 범주로 나뉘어 분류
- 포괄적 협의 지위의 NGO는 대규모의 국제 NGO로서 경제사회이사회가 다루는 대부분의 이슈를 다루는 NGO가 해당
 - ※ IFRC, IPU, Rotary International, Zonta International 등 120여개 NGO
- 특정분야 협의 지위의 NGO는 ECOSOC의 특정영역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NGO가 해당
 - ※ Amnesty International, Greenpeace, World Vision International 등
- 특정문제 자문지위(Roster)에 속하는 NGO는 위는 두 범주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경제사회이사회 영역에 속하는 활동을 하거나 공헌을 할 수 있는 NGO가 해당

- 협의지위를 부여받은 NGO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됨.
 - 경제사회이사회의 잠정의제가 모든 협의지위 NGO들에게 회람되어 이들이 예비안건에 자신의 안을 포함시킬 수 있음.
 - 포괄적 협의지위와 특정분야 협의지위의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와 그 산하기구의 공개회의에 옵저버로서 대표를 보낼 수 있다. Roster의 NGO도 그들의 분야에 관계된 회의에 대표를 보낼 수 있음.
- 포괄적 협의지위와 특정분야 협의지위의 NGO는 유엔 문서로서 경제사회이사회의 회원국들에게 회람되고 출판되는 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4년마다 그들의 활동사항을 유엔 사무총장에 보고해야 함.

3. NGO의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 신청절차

- 통상 전년도 6.1.까지 경제사회이사회에 관련서류를 구비, 협의지위 신청
- 관련서류
 - 기구의 구성을 규정한 규정이나 정관
 - 기구의 비영리성을 증빙하는 자료
 - 기구활동, 구성원 및 본부 소재지에 대한 자료
 - 기구의 예산내역
 - Questionnaire에 대한 답변서 등
- NGO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협의지위 부여 여부를 심사한 후, 경제사회 이사회 본회의(매년 7월경 개최)에서 최종 확정 /끝/